



의안번호

제123호

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

제 출 자	논 산 시 장
제출연월일	2022. 9. 14.

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

의안 번호	제123호
----------	-------

제출연월일 : 2022. 9. 14.

제출자 : 논산시장

1. 제안이유

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2조 및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 제94조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2023년도 논산시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편성하고자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논산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□ 한국지방세연구원 개요

- 연혁 : 2011년도 설립된 243개 지방자치단체 공동 출연 운영기관
- 설립목적
 - 지방재정 분권실현 및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이론적 연구 수행
 - 자치단체의 교육, 홍보, 워크숍 등 다양한 지방세 현안에 대한 사업추진
- 위치 : 서울시 서초구 소재
- 현황 : 원장(배진환), 현원(69명)

□ 출연 필요성

-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·출연하고자 함
 - ※ 연구원 운영예산 2022년도 14,200백만원 중 79%를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운영

□ 출연계획

○ 출연금액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22년			2023년 (C)	증감 (D=C-A)
	계(A+B)	당초(A)	추경(B)		
시비 (100%)	8,511	8,511	0	8,827	316

- 산출근거 :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×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*
 ('21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73,561,826천원 × 1.2/10,000 = 8,827천원)

구 분	~2020년	2021년	2022년 이후
*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	1.5/10,000	1.3/10,000	1.2/10,000

※ 연도별 출연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
출연금	8,685	8,852	7,828	8,511	8,827

□ 기대효과

- 지방세제 개편 및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
- 지방재정·세제의 발전 및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

참고 1

한국지방세 연구원

설립근거	법 률 : 지방세기본법 제151조			전화번호 : 02-2071-2798			
				홈페이지 : www.kilf.re.kr			
주요연혁	- 2011.2 설립등기, 2011.4 개원			기관형태 (출자, 출연)		- 출연	
인원현황 (2022년 8월 기준)	계	정규직			임시·파견직		
	85명	69명 (원장1, 부원장1, 연구위원22, 연구원17, 조사분석직6, 전문직3, 사무직18, 시설직1)			16명 (위촉연구원5, 파견공무원9, 청사관리원2)		
임 원 (2022년 8월 기준)	직 책	성 명	주요경력		임 기		
	이 사 장	백 재 현	한국지방세연구원 이사장		2020.12.22. ~ 2023.12.21.		
	부이사장	오 언 석	서울 도봉구청장		2022.2.28. ~ 2023.2.27.		
	이 사	배 진 환	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		당 연 직 (2019.11.18. ~ 2022.11.17.)		
	이 사	이 우 종	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관		당 연 직		
	이 사	김 선 조	부산광역시 기획조정실장		2022.2.28. ~ 2023.2.27.		
	이 사	안 승 대	울산광역시 기획조정실장		2022.2.28. ~ 2023.2.27.		
	이 사	김 기 홍	전라남도 자치행정국장		2022.2.28. ~ 2023.2.27.		
	이 사	황 명 석	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		2022.2.28. ~ 2023.2.27.		
	이 사	이 충 우	경기 여주시장		2022.2.28. ~ 2023.2.27.		
	이 사	김 미 경	서울 은평구청장		2022.2.28. ~ 2023.2.27.		
	이 사	김 재 욱	경상북도 칠곡군수		2022.2.28. ~ 2023.2.27.		
	이 사	유 태 현	남서울대학교 세무학과 교수		2021.2.28. ~ 2023.2.27.		
	감 사	이 현 정	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		당 연 직		
	감 사	김 능 식	오산시 부시장		2022.2.28. ~ 2024.2.27.		
	주요기능	-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					
설립자본금 (단위:백만원)		1 (직전연도말 기준)			출자·출연액 (단위:백만원)		88,151 (설립이후 2021년까지 지자체가 출자·출연한 금액)
최근3년간 예산 현황 (단위:백만원)	연도	2020	2021	2022	재무현황 (백만원) ‘21.12.31기준	자산	21,000 (자산 총액)
	예산액	10,855	11,928	14,200		부채	1,147 (부채 총액)
	지자체 지원액	8,972	10,821	11,161		자본	19,853 (자본금 총액)
경영성과 (단위:백만원) ‘21.12.31기준	총수익			총비용		당기순이익	
	12,376			11,094		1,282	

□ 「지방세기본법」

제151조(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·운영) ①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·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(이하 “지방세연구원”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

② 지방세연구원의 이사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, 감사 2명을 둔다. 이 경우 이사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각각 협의하여 공무원, 교수 등 지방세에 대한 조예가 있는 사람을 각각 같은 수로 추천·선출하되, 이사장은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.

③ 지방세연구원의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며, 이사장과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.

④ 지방세연구원의 설립·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,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「민법」 제32조와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(같은 법 제5조는 제외한다)을 준용한다.

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입과 관련한 연구·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수 있다. <신설 2020. 12. 29.>

제152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·운용)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·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·운용하여야 한다.

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(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,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)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, 용도,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

□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

제94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)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” 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. <개정 2019. 12. 31., 2020. 9. 8.>

1. 1만분의 1.2

2. 1만분의 0.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

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.

1.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

2.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,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·평가

3. 지방세의 연구·홍보

4.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

5.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

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.

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.

□ 「지방재정법」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14.5.28.>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 <신설 2014.5.28.>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